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연구위원 홍원구

사람들의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퇴직후 은퇴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안정적인 노후소득이 중요해지고 있다.

기본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국민연금은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하여, 2010년 10월 현재 기금액이 300조원을 넘고 있다.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매년 낮아져, 40년 가입한 평균 소득자에게 40%의 소득대체율¹⁾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퇴직연금²⁾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소득의 중요한 원천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보완할 사적 연금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퇴직연금의 역할 정립을 위해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수준을 추정해보고, 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1.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

국내 퇴직연금은 급여수준을 연금으로 확정하지 않고, 일시금으로 확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달리 소득대체율을 확정할 수 없다. 다만 일시금으로 받는 퇴직급여를 연금화하였을 때 연금액과 퇴직 전 소득을 비교하여 소득대체율을 예상할 수 있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퇴직연금 유형, 투자수익률, 근로연수, 퇴직기간 등 여러 가지 변수의 영향을 받는다.

우선 DB형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대체율은 근로기간과 퇴직기간, 그리고 퇴직후 연금자산의 투자 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예를 들어 26세에 특정 회사에 입사하여 30년간 근무하고 55세에 퇴사하는 근로자를 살펴 본다. 이 근로자가 받은 퇴직일시금을 연금으로 바꾸어 80세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연금을 받는 기간의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한다.³⁾

* 본고의 견해와 주장은 필자 개인의 것이며, 자본시장연구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1) 소득대체율이란 퇴직전 소득에 대한 퇴직후 소득의 비율을 말한다.

2) 2010년 9월말 현재 퇴직연금 적립금 20조 3,089억원이며, DB형 퇴직연금의 적립금이 13조 5,910억원으로 66.9%를 차지하고 있다.

3) 2009년 퇴직연금 수익률이 5.58%~13.93%에 이르고 있다(금융감독원).



근로자가 받는 퇴직일시금은 근무연수와 월급여를 곱하여 결정된다. 이 사례에서는 월급여가 100만원⁴⁾이었다면, 3,000만원(= 30 × 100만원)을 받게 된다. 일시금을 연금의 현금으로 나누면 연금액을 구할 수 있다.

$$\begin{aligned} \text{근무연수} \times \text{월급여} &= 30 \times 100\text{만원(예)} = 3,000\text{만원} \\ 25\text{년, 투자수익률 연 } 5\%, \text{ 매월말 지급 연금현가}^{5)} &= 171.06 \\ \text{매월 연금액} &= 3,000\text{만원}/171.06 = 17.54\text{만원} \\ \text{소득대체율} &= 17.54\text{만원}/100\text{만원} = 17.54\% \end{aligned}$$

이 사례에서 소득대체율(=연금액/최종 급여)은 17.5%이다. 즉 최종 월급여가 100만원이었다면, 매월 17만 5,000원, 최종 월급여가 412만원이었다면 72만원을 받게 된다. 한편 투자수익률이 3%로 낮아지면, 소득대체율도 14.2%로 낮아지고, 투자수익률이 7%로 높아지면 21.2%로 높아진다. 한편 40년 근무 후에 65세 퇴직하는 근로자가 받은 DB형 퇴직연금 일시금을 15년간 연금으로 받으면 소득대체율은 31.6%로 높아진다(투자수익률 5%).⁶⁾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기간, 연금수급기간, 연금수급기간 동안의 투자 수익률 이외에 근로기간동안 급여상승률과 적립기간의 투자수익률도 소득대체율에 영향을 미친다.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과 같다면 퇴직일시금이 같아져 소득대체율도 DB형과 동일하다. 적립기간 동안 투자수익률이 임금상승률보다 낮다면 최종 퇴직일시금이 DB형 퇴직연금에 비해 적어져, 소득대체율도 낮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률이 3%(7%)이고, 임금상승률이 5%인 경우는 소득대체율이 10.9%(28.3%)로 낮아(높아)진다.

2. 소득대체율 결정 요인

현행 퇴직연금 제도하에서 소득대체율은 퇴직시 받는 일시금의 크기, 연금수급기간과 투자수익률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퇴직시 받는 일시금은 퇴직연금에 대한 납입액, 근무연수, 그리고 퇴직할 때까지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4) 최종급여가 달라지면 그에 따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은 일정하다.

5) 연금현가 = $[1 - 1/(1+i)^N]/i$, i 투자수익률, N 지급기간

6) 국민연금 40년 가입시 목표 소득대체율 40%와 직접 비교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 국민연금은 종신연금을 지급한다. 평균소득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평균 이하의 소득자에게는 40%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이 보장된다. 40%는 2028년 이후 40년 가입할 경우 소득대체율이며, 현재 가입자들은 40년 가입시 40%보다 높은 소득대체율을 보장받는다. 그리고 국민연금 급여는 물가상승에 따라 증가한다.

1) 납입액

매년 납입금을 증가시키면 소득대체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는, 근로자의 추가 납입제도가 중요하다. 사용자의 추가적인 납입은 단기간에 쉽지는 않겠지만 기업에 이익이 있을 때 비정기적인 추가 납입을 인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과 납입액을 비교해 볼 때 현재 퇴직연금 납입액도 적은 금액은 아니다. 국민연금에는 연소득의 9%를 납입하고, 퇴직연금에는 8.33%(=1/12)를 납입한다.⁷⁾ 호주의 경우 급여의 9%를 의무 납입하는 퇴직제도를 통해 2007년 기준 1,143억 호주 달러(GDP 대비 105.5%)에 이르는 퇴직자산을 형성하였다.⁸⁾ 그러므로 현재의 납입액이라고 가능한 한 오랜 기간 퇴직연금제도에 적립하는 것이 우선 과제이다.

2) 근무연수

근무연수는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근로자가 1년을 더 일한다는 것은 퇴직연금에 추가적인 납입을 한다는 것이고, 기존의 납입액이 1년 더 운용되어 투자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DC형 가입자에게 있어 투자수익률이 일정하다면 투자기간이 늘어날수록 적립금이 증가한다. 또한 장기투자로서 단기 투자에서 오는 투자성과의 변동을 흡수할 수 있다. DB형 가입자의 소득대체율은 근무기간, 퇴직후 연금수급기간과 퇴직후 투자수익률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DB형 가입자에게는 퇴직급여를 늘리는 방법으로 근무연수를 늘리는 방법 외에는 없다.

근무연수가 소득대체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중간정산제를 폐지하여 퇴직연금 적립금이 퇴직전에 소진되거나 퇴직급여 산정시 근무연수가 짧아지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한다. 또한 이직하는 경우에도 개인퇴직계정을 통한 기업별 퇴직연금 제도간 통산이 중요하다. 근로자가 이직할 때마다 퇴직일시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한다면, 정년 직전의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 만큼의 퇴직일시금만이 퇴직 후 자금으로 남을 것이며, 소득대체율은 아주 낮아 질 것이다.⁹⁾

퇴직연금 제도 내에서 통제하기 어려운 요인들이기는 하지만, 조기취업, 실업기간 최소화, 정년연장 등도 근무연수를 늘리는 데 중요하다.¹⁰⁾

7) 고소득자의 경우 국민연금 납입액은 연소득 전액이 아닌 한도(2010년 368만원)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고소득자에게는 퇴직연금의 납입액이 국민연금에 비해 많을 수 있다. 국민연금 납입액은 장애연금 등 다른 보장 비용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소득재분배 기능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의 잠재력을 가늠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퇴직연금에 비해 적립기간이 길다.

8) Brunner, Gregory Gordon., and Craig Thorbon (2008) The Market for Retirement Products in Australia, The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9) 2009년 기준 근로자의 평균 근속연수는 6.2년이다(고용노동부).

10)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데는 조기 취업보다 노년 취업연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왜냐 하면 정년연장은 취업기간을 늘리는 동시에 연금수급기간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3) 투자수익률

DB형 퇴직연금의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최종급여와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DB형 퇴직 연금의 투자수익률은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투자수익률에 따라 기업의 퇴직연금 조달 비용이 달라지므로, 기업의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치고, 간접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DC형의 경우 근로기간 또는 적립기간 동안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일시금이 달라지며, 또한 소득대체율이 달라진다.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이 근로자의 노후소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 현행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에 대한 운용 기준은 완화될 필요가 있다. 임금상승률 만큼 투자수익률이 보장되는 DB형 대신 DC형을 선택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안정성을 원한다면 DB형을 선택하였을 것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산운용 규제는 근로자의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근로자가 DB형과 DC형 중 어느 형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미래의 퇴직일시금이 달라질 것이다. 임금상승률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투자수익률을 높이기 위하여 위험자산 비중을 높이면, 이에 따라 변동성도 높아져 DC형 퇴직일시금이 DB형 퇴직일시금에 비해 적어질 위험도 동시에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수익과 위험의 수준은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한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 취지가 약화될 것이다.

4) 퇴직후 투자수익률과 연금화 상품 개발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일시금을 받으면, 노후소득대체율은 연금의 수급기간과 투자수익률에 따라 달라진다. 연금의 수급기간은 개인의 선택 또는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퇴직연금 일시금의 연금화는 연금사업자를 통해서 이루어 질 것이다. 연금 사업자들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향후 퇴직급여 인출이 본격화되기 전에 안정적인 퇴직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연금화 상품의 개발과 이에 대한 준비작업으로서 연금 사업자들이 제공할 수 있는 연금 금액에 대한 정보를 모아 공시 또는 지표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나 목표 소득대체율은 퇴직연금 제도의 정착과 개선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구체적인 목표가 설정되어야 적립금 운용 규제 완화, 중간정산제 폐지, 그리고 퇴직급여의 연금화 등을 일관된 방향에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끝.